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16
----------	------

발의연월일 : 2016. 11. 28.

발의자 : 박남춘 · 윤후덕 · 김정재
황주홍 · 박찬대 · 김철민
인재근 · 윤소하 · 이혜훈
권은희 · 정태옥 · 이재정
이찬열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등의 추락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원활히 배상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 및 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

고물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3 신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 및 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배상한도액,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등 의 가입) ① 제11조제1항에 따 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 및 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 의 범위, 배상한도액,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p>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2 (생 략) <u><신 설></u>	<p>제20조(과태료) ① ----- ----- ----- -----.</p> <p>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